

「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월 6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 의원(1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 ·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영태 · 김춘남 ·
소진혁 · 신용하 · 양진오 · 이상호 · 장미경 ·
정지원 의원(11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월 7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월 15일

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대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
 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와 관내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이 조례안의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 등에서 ‘대학’에 대한 지역적 범위의 규정이 없는데,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지역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- 만일 구미시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지역대학의 협력을 위한 조례안이라면, 제1조(목적)의 “이 조례는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

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
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 를 “이 조례는
구미시와 지역 대학(또는 ‘구미시 소재 대학’)이 (생략)
목적으로 한다.”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- 조례안 제3조(협약의 체결)와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, 제5조
(대학협력 사업)의 규정은 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
경우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구미시와 대학 간의 총괄적인
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임.
- 이는 구미시가 이미 지역대학과의 다양한 개별사업을 협력
하여 추진하고 있으나, 사업단위로의 협약은 그 사업이 종료된
후 사후관리나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한계가
있으므로,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대학협력
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, 구미시의
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에 두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히
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한편, 조례안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와 제6조(사후관리 및
평가)에서 구미시와 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대학협력 추진
계획을 수립하고, 대학협력 사업 추진 후 시장이 이를 평가
하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집행기관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, 사업시행, 사업평가의
전 과정에서 사업공모, 주민 설문조사 또는 지역발전에
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관된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을
구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여,

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학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

- 또한, 구미시가 대학협력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, 예산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, 사업 평가를 위해 사업 목표 달성도, 지역사회 기여도, 사업 효과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 론 요 지

- ‘대학’에 대한 지역적 범위를 규정하여 조례안의 목적과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1조와 제2조를 수정함.
- 본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는 규정하였으나, 협력사업의 주체인 대학의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음. 대학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하므로 제6조의 사후관리 및 평가를 수정하고, 시장은 매년 협력대학과의 사업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함.
- 본 조례를 통해 구미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역할과 사업의 세부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.
- 집행기관은 ‘사후관리 및 평가’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고 의회에 적극 보고하여야 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

※ 별표 - 참고자료

○ 구미시와 지역 대학의 업무협약 추진 현황(2024년도 기준)

대학명 (총장, 학교구분)	소재지/재 학생수	2024 사업현황	사업소관부서	총 사업비 (시비)
구미대학교 (총장 이승환) (2/3/4년제 전문대)	구미시 야은로 37, 부곡동 (6,779명)	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외 19건	가족정책과, 세정과, 인구청년과, 교육청소년과, 신산업정책과, 반도체방산과, 농촌지원과, 평생학습원	10,695,745천원 (시비 4,546,407천원)
국립금오공과 대학교 (총장 곽호상) (4년제 국립대)	구미시 대학로61, 양호동 (7,405명)	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 외 22건	가족정책과, 인구청년과, 교육청소년과, 기업지원과, 신산업정책과, 반도체방산과, 전략산업과, 평생학습원	16,446,682천원 (시비 2,881,760천원)
경운대학교 (총장 김동제) (4년제 사립대)	구미시 강동로 730, 산동읍 (5,965명)	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 외 13건	가족정책과, 인구청년과, 교육청소년과, 신산업정책과, 반도체방산과, 체육진흥과, 평생학습원	8,382,330천원 (시비 1,709,052천원)
한국폴리텍대학교 구미캠퍼스 (총장 최재윤) (2/3년제 전문대)	구미시 수출대로3길 84,공단동 (660명)	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	교육청소년과	130,000천원 (시비 91,000천원)